

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은 미래를 위한 환경저축입니다.



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

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·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출고량의 일정비율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, 의무 미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재활용 부과금으로 부과하는 등 생산자의 책임을 재활용까지 확대시킨 제도

재활용 의무대상 품목(21개품목)

제 품 : 타이어, 전지류, 형광류, 전자제품(10종),
포장재 : 유리병, 금속캔,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등
(음식료품류, 농·수·축산물, 의약품등 포장에 한함)



전자제품

텔레비전, 냉장고, 세탁기(가정용), 프린터, 복사기
에어컨디셔너(자동차용 제외), 오디오(휴대용 제외)
개인용 컴퓨터(모니터, 키보드 포함), 팩시밀리
이동전화기단말기(전지, 충전기 포함) 등

※시에서 무상 수거합니다

